

시 민

문서번호	여성정책담당관-3839
결재일자	2012.3.1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여성일자리팀장	여성정책담당관	여성가족정책실장
협 조			
예산담당관			

**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사용료관련 예산전용계획**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 업 비
	부서(단체)명	협약내용	협약결과	

**여성가족정책실**  
(여성정책담당관)

#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사용료관련 예산전용계획

구)서울의료원 건물을 활용한 「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」 설치·운영 관련, 행정재산 사용 수익·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분에 대하여 우리시가 예산전용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함

## I 사업근거 · 목적

### 사업근거

#### 법적 근거

-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(여성의 복지증진) 및 제33조(여성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)
-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(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)
- 장애인복지법 제7조(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)

- 여성장애인인력개발센터 설치·운영계획(여성정책담당관-107852, '11.7.19)

### 사업목적

- 여성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
- 취업·창업지원 및 안정적 직업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관리체계 운영
- 지역사회 내 인적·물적 자원을 연계한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

## II 사업 개요

위 치 : 강남구 삼성동 171, 171-1 (서울의료원 内)

규 모 : 신관동 1층 및 본관 1층 일부 (1,036.85㎡)

※ 시설기준 :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 (825㎡ 이상)

기 능 : 직업교육, 취업·창업 상담 및 알선, 사회적응지원 등

운영방법 : 공유재산 리모델링 후 운영단체 심의선정

이용대상 : 서울시 거주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등

[ 서울의료원 현황 ]

■ 서울의료원 현황

- 소재지 : 강남구 삼성동 171, 171-1
- 면적 : 토지 31,656㎡, 건물 32,829㎡ 중 23,036㎡ 활용
- 도시계획 : 제2종 일반주거지역(7층 이하), 공용시설보호지구 등
- 건물 활용계획

구분	서울의료원 강남 분원	청소년종합 지원센터 등	광역자활센터	장애여성 인력개발센터	다문화가족 지원센터	장년창업센터	강남 구립어린이 집
주관 부서	보건정책과	아동청소년 담당관	자활지원과	여성정책 담당관	저출산대책 담당관	창업 소상공인과	보육담당관
주요 용도	병원일부 및 장례식장	산재한 청소년시설 을 청소년종합지 원센터로 통합 운영	광역단위 자활사업을 위한 사무실 및 교육장	장애인여성을 위한 취업, 창업교육 및 취업연계 사업	이민자 및 자녀를 위한 다목적 다문화가족교 육시설 설치	「4050장년창 업 프로젝트」 추진을 위한 장년창업공 간 확보	강남 구립어린이 집
사용 위치	본관동 우측(1~3층) 본관동 지하, 옥탑 장례식장	신관동 4~5층 본관동 4~5층 지하 1층 일부	신관동 2층 본관동 2층 일부	신관동 1층 본관동 1층 일부	신관동 3층 본관동 3층 일부	후관동	신관동 1층 (좌측 끝)
사용 면적	12,360.8㎡	6,980.0㎡	1,591.86㎡	1,036.85㎡	1,124.17㎡	3,998.95㎡	486㎡
입주시 기	‘11.3.25 (입주완료)	‘12.상반기	‘11.11.4 (일부 입주)	‘12.2월	‘11.12월 (입주완료)	‘11.7.1 (입주완료)	‘12.6월
무료 주차면 수 (총85면)	43면	16면	5면	5면	4면	12면	

### Ⅲ

## 추진 현황

- 서울의료원 신관 및 본관 1층사용 협의 완료('10.11월, 공유재산과)
- 유치 사유 : 민간시설 건물주의 임대기피 및 접근성이 용이한 구)서울의료원의  
이전에 따른 유희공간 활용성이 용이함
- 예산집행 현황 : 660백만원
- 그간의 추진현황
  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』 일부개정 : '11. 7. 28
    - 공용시설보호지구 내 교육연구시설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 삭제
  -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시설 개보수 공사의뢰 : '11. 7월
  - 운영예정자 선정(사, 내일을여는멋진여성) : '11. 10월
  - 건물용도 변경 및 시설 개보수공사 착공 : '11. 11월
  - 시설교육 기자재 설치 및 교육생 모집 안내 : '12. 2월~4월
  - 센터 개관 및 운영 : '12. 4월 중

### Ⅳ

## 센터운영계획

- 센터운영 방향
  -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방안 : 운영자 공개모집
    - 근거 :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(여성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)  
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(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)
    - 절차 : 운영자 모집공고(여성정책담당관) → 접수·심사선정 → 지정서 발급
  - ※ 기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지정서 발급하여 운영

## □ 운영 개요

- 공유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의 사유 등 객관성 담보 필요
- 시립시설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단체와 수의계약 체결(계약기간 3년)
- 수의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, 기간 만료 후 재계약 검토

## □ 업무흐름도



## □ 관련 근거

### ○ 사용허가관련 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3조
-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

### 관련 법 규

#### 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**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.**
  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**

#### 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(사용·수익허가의 방법)

- ③ **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**
4.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
- 5. 법 제24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**

#### ■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**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**
8. 그 밖에 계약의 목적·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
**바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·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**

※ 장애인복지단체 :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단체 (장애인복지법 제63조)

## ○ 사용료 산출관련 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3조
-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

### 관 련 법 규

#### ■ 『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』 제22조(사용료)

제22조(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料率)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. 다만,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에 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#### ■ 『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』 제14조(사용료)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..

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.

V

## 예산전용계획

### 사용료 지원 배경

- 센터 설립 방침 수립시 『장애인복지법』 제48조(국유·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·무상 대여) 규정을 적용하여 무상대부를 하고자 하였으나,
- 최종 검토결과, 『장애인복지법』 제48조상의 “대부”가 가능한 재산은 일반재산에 한하므로, 행정재산(서울의료원)은 법규 적용이 불가능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가 불가하게 됨(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)

□ '12년 사용료 지원 예산확보 : 예산전용

○ 전용 예산액 : 470,000천원

- 예산과목 : 세입예산(임대료수입), 세출예산(민간경상보조)

〈 기본현황 〉

- 소재지 : 강남구 삼성동 171, 171-1 서소문동 37
- 용도지역 :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    ○ 법정 상한 건폐율 : 60%
- 건물 및 현황 : 임대면적 1,036,85m<sup>2</sup>
- 건물 감정평가액 : 660,000원/m<sup>2</sup>  
(※감정평가 수행기관 : (주)대화감정평가법인, 2011년 기준(저출산대책담당관-113134(2011.11.30))
- 개별공시지가 : 9,050,000원/m<sup>2</sup>
- 사용료의 요율 : 50/1,000

■ 건물의 재산가액 : 684.321,000원

임대면적(공용부분 포함) × m<sup>2</sup>당 건물 감정평가액

○ 1,036.85m<sup>2</sup> × 660,000원 = 684.321,000원

■ 토지의 재산가액 : 7,819,577,083원

건축면적 × 건폐율의 역수 × [임대면적(공용부분 포함)/1층 전체면적] × 1/2 × 개별공시지가

○ 1,036.85m<sup>2</sup> × 100/60 × 1/2 × 9,050,000원 = 7,819,577,083원

■ 연간 사용료 : 467,714,394원 (VAT(42,519,490원) 포함)

(건물+토지 재산가액) × 사용료의 요율

○ (684.321,000원 + 7,819,577,083원) × 50/1,000 = 425,194,904원

○ 예산전용(안) 검토

- 사용료 부과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한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미편성 되었으나, 동일사업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예산의 일부 활용 가능함

【 '12년도 임차료(민간자본보조) 예산현액 : 1,800백만원 】

구분	예산	산출내역	지급시기	비 고
임차보증금	1,800,000	300,000 × 6개소	연중(재계약시)	수요발생센터 수시배정

- '12년도에 시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3개소(동작, 종로, 동대문) 우선 지원 : 9억원
- ➔ 나머지 9억원 중 일부는 장기간 임차료 증액을 하지 않은 센터에 대해 지원하되, 집행잔액 중 일부는 사용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자 함

○ 예산의 전용사용 내역

- 요구부서 : 여성가족정책실(여성정책담당관)
- 요 구 액 : 47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정책사업	단위사업	예산과목			예산현액	증감내역		전용사용후 예산(현)액
	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	여성경제력 강화	여성인력 개발센터운영	민간자본 이전 (402)	민간자본 보조 (402-01)	1,800,000		470,000	1,330,000
			민간이전 (307)	민간경상 보조 (307-02)	-	470,000		470,000

붙임 :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사용료관련 검토(안)



# 예 산 전 용 요 구 서

- 회 계 명 : 일반회계
- 요구부서 : 여성정책담당관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	예산현액	증감내역		전용사용후 예산(현)액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	여성경제력 강화	여성인력 개발센터운영	민간자본 이전 (402)	민간자본 보조 (402-01)	1,800,000		470,000	1,330,000
			민간이전 (307)	민간경상 보조 (307-02)	-	470,000		470,000

## □ 전용사유

○ 구, 서울의료원의 일부에 대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며, 운영법인에 대한 사용·수익허가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사용료에 대한 예산이 미편성되어, 동일사업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임차보증금 예산액의 일부를 활용하여 470,000천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.

-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자본보조(402-01) ⇨ 민간경상보조(307-02)

2012. 3.  
여성가족정책실

기획조정실장 귀하